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09204 |
| 의 뢰 인 | 백승아 의원 |
| 회 답 일 | 2025. 4. 24. |
| 추계번호 | 25E1779 |

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

## 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7년 143억원 등 5년간 총 819억원(연평균 16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|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 (안 제59조의4) | −143 | −152 | −162 | −174 | −189 | −819 | −164 |

# Ⅱ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59조의4제5항 (특별세액공제) | ○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아이돌봄 서비스[1] 이용료 30%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(1명당 연 200만원 한도) | |

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59조의4제5항(특별세액공제) | ○ | |

1)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(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3호)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징수기준에 따라 추계기간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설정

○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동 시행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(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)

○ 2026년~2030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7년~2031년 발생(징수기준)

❑ 개정안에 따른 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 아동 1명을 양육하는 3인 가구(일반가정[2))의 양육자로 하고, 공제대상 금액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이용료로 가정

○ 개정안은 공제대상을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비로 규정

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증감률은 동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단가의 증감률과 같은 것으로 전제하여 향후 가구당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 이용료 비중은 최근(2024년) 수준을 유지하고, 동 서비스 이용 가구수 및 본인부담 이용료 규모는 최근 4년간(2021~2024년)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

❑ 전체가구 중 근로자 가구 비중, 과세대상근로소득 구간별 총인원 대비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중은 최근(2023년) 수준이 향후 추계기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❑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
2)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대상가정을 일반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장애아동가정, 청소년부모가정 등으로 분류하여 일반가정 이외의 경우 정부지원금 추가 지원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 가.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요

❑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[3]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주거지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 서비스 제공

○ 목적 및 대상에 따라 영아종일제, 시간제, 질병감염아동지원 등으로 구분

– 기관연계 서비스의 경우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므로 동 추계에서 제외

[표 2]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대상

| 종류 | 대상 |
|---|---|
| 영아종일제 서비스 | 생후 3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 영아 |
| 시간제 서비스 |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|
|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|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|
| 기관연계 서비스 | 사회복지시설,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 |

주: 시간제서비스는 일반적인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기본형과,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하는 종합형으로 구분

자료: 여성가족부, 「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」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기준, 가구 특성(일반가정, 한부모가정 등), 아동 취학여부, 양육공백여부[4]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정부에서 일정금액 지원

○ (소득기준)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고, 금액 구간별로 가·나·다·라·마형으로 구분[5]

– 가형: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

– 나형: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

– 다형: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

– 라형: 양육공백 미발생 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

※ 2025년부터는 라형을 양육공백 발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200%

3)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조

4) 맞벌이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

5) 2024년 3인 가족 중위소득 기준: 가형 3,37,000원 이내, 나형 5,322,000원 이내, 다형 6,653,000원 이내, 라형 6,653,000원 초과

이하 가구로 하며, 양육공백 미발생 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 200% 초과 가구를 마형으로 신설

○ (아동 연령) 취학 여부에 따라 A·B형으로 구분

- A형: 2024년 기준 2017. 1. 1. 이후 출생아동(미취학)
- B형: 2024년 기준 2016. 12. 31. 이전 출생아동(취학)

[표 3]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: 2024년 기준

(단위: 원)

| 구분 | 영아 종일제 | | 시간제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기본형 | | | | 종합형 | | | |
| | | | A형 | | B형 | | A형 | | B형 | |
| | 정부 지원 | 본인 부담 | 정부 지원 | 본인 부담 | 정부 지원 | 본인 부담 | 정부 지원 | 본인 부담 | 정부 지원 | 본인 부담 |
| 가형 | 9,886 | 1,744 | 9,886 | 1,744 | 8,723 | 2,907 | 9,886 | 5,224 | 8,723 | 6,387 |
| 나형 | 6,978 | 4,652 | 6,978 | 4,652 | 3,489 | 8,141 | 6,978 | 8,132 | 3,489 | 11,621 |
| 다형 | 2,326 | 9,304 | 2,326 | 9,304 | 1,745 | 9,885 | 2,326 | 12,784 | 1,745 | 13,365 |
| 라형 | 0 | 11,630 | 0 | 11,630 | 0 | 11,630 | 0 | 15,110 | 0 | 15,110 |

주: 1. 일반가정 영아 1명 기준 이용요금표. 시간제 서비스는 일반적인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기본형과,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하는 종합형으로 구분

자료: 여성가족부 자료(「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」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나. 추계 방법

❑ 개정안에 따른 2024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계한 후, 최근 4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수 증감률 및 동 서비스 이용료 증감률을 적용하여 향후 추계기간의 세수효과 추계

❑ (2024년 기준 세수효과)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유형별 가구당 부담금을 바탕으로 공제세액 추산 후,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수, 동 서비스이용 근로소득자 비율,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을 곱하여 2024년 기준 세수효과 추계

○ (가구당 서비스이용 부담금) 2024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구평균 본인부담금은 영아종일제의 경우 348만원, 시간제의 경우 220만원, 질병감염아동지원의 경우 13만원 등의 수준으로 집계

[표 4]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에 따른 소득유형별 본인부담 현황: 2024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, 가구)

| 구 분 | | 가형 | 나형 | 다형 | 라형 | 전체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영아 종일제 | 총 본인부담금(A) | 1,305 | 1,075 | 190 | 1,444 | 4,014 |
| | 총 가구 수(B) | 771 | 228 | 26 | 130 | 1,155 |
| | 가구당 부담금(A/B) | 1.7 | 4.7 | 7.3 | 11.1 | 3.5 |
| 시간제 | 총 본인부담금(A) | 45,232 | 41,127 | 14,509 | 39,160 | 140,028 |
| | 총 가구수(B) | 35,592 | 16,364 | 3,435 | 8,223 | 63,614 |
| | 가구당 부담금(A/B) | 1.3 | 2.5 | 4.2 | 4.8 | 2.2 |
| 질병감염 아동지원 | 총 본인부담금(A) | 219 | 268 | 92 | 226 | 805 |
| | 총 가구수(B) | 3,339 | 1,716 | 372 | 980 | 6,407 |
| | 가구당 부담금(A/B) | 0.07 | 0.16 | 0.25 | 0.23 | 0.13 |

자료: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(가구당 공제세액) 상기 소득유형별 가구당 본인부담금에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비율(30%) 및 한도(200만원)를 적용하여 공제세액 산출

- 다만, 소득유형별 공제세액이 과세대상근로소득구간의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결정세액만큼만 공제
- 2023년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에 해당하는 월소득 구간을 연간소득으로 환산(월소득×12개월)한 후, 해당 연간소득이 포함되는 과세대상근로소득 구간의 1인당 결정세액 산출

[표 5]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에 따른 소득유형별 가구당 공제세액 추정: 2024년 기준

(단위: 만원)

| 구 분 | | 가형 | 나형 | 다형 | 라형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득 및 세액 | 월소득[1)] | 0 ~ 354 | 354 ~ 566 | 566 ~ 707 | 707 ~ |
| | 연간소득 환산 | 0 ~ 4,248 | 4,248 ~ 6,792 | 6,792 ~ 8,484 | 8,484 ~ |
| | 결정세액[2)](A) | 30 | 159 | 363 | 1,807 |
| 영아 종일제 | 가구당 본인부담금(B) | 169 | 471 | 731 | 1,111 |
| | 공제대상액 (C)=min[200, B] | 169 | 200 | 200 | 200 |
| | 공제세액 min[A, (C×30%)] | 30 | 60 | 60 | 60 |

| 구 분 | | 가형 | 나형 | 다형 | 라형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간제 | 가구당 본인부담금(B) | 127 | 251 | 422 | 476 |
| | 공제대상액 (C)=min[200, B] | 127 | 200 | 200 | 200 |
| | 공제세액 min[A, (C×30%)] | 30 | 60 | 60 | 60 |
| 질병감염 아동지원 | 가구당 본인부담금(B) | 7 | 16 | 25 | 23 |
| | 공제대상액 (C)=min[200, B] | 7 | 16 | 25 | 23 |
| | 공제세액 min[A, (C×30%)] | 2 | 5 | 7 | 7 |

주: 1) 월소득은 각 소득유형별 2024년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
2) 국세청 「국세통계연보」의 2023 귀속연도 기준 과세대상근로소득(총급여) 구간별 1인당 결정세액('가': 4천만원 이하, '나': 4천만원~6천만원, '다': 6천만원~8천만원, '라': 8천만원 초과)

○ (서비스 이용 근로소득자 비율) 2023년 기준 「가계동향조사」(통계청, 2024년) 상 전체가구 중 근로자가구[6] 비중(61.2%)을 적용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중 근로소득자 비중 추정

○ (서비스 이용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중) 2023년 기준 「국세통계연보」(국세청, 2025년) 상 과세대상근로소득 구간별 총인원 대비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율을 적용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중 추정

- 2024년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에 해당하는 월소득 구간을 연간소득으로 환산(월소득×12개월)한 후, 해당 연간소득이 포함되는 과세대상근로소득 구간의 총인원 대비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율 계산
-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은 가형 48.8%, 나형 90.9%, 다형 99.0%, 라형 99.9%로 나타남
- 상기 추정 비율은 향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

6) 정부, 기업, 타기구에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가구로, 사무직가구와 생산직가구의 합으로 구성

[표 6] 소득유형별 서비스 이용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: 2024년 기준

(단위: 만원, %)

| 구 분 | 가형 | 나형 | 다형 | 라형 | 전체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소득[1)] | 0 ~ 354 | 354 ~ 566 | 566 ~ 707 | 707 ~ | - |
| 연간소득 환산 (과세대상근로소득) | 0 ~ 4,248 | 4,248 ~ 6,792 | 6,792 ~ 8,484 | 8,484 ~ | - |
| 과세대상자 비율[2)] | 48.5 | 93.1 | 99.3 | 99.9 | 67.2 |

주: 1) 월소득은 각 소득유형별 2024년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
2) 국세청 「국세통계연보」의 2023 귀속연도 기준 과세대상근로소득(총급여) 구간별 과세대상자 비율 ('가': 4천만원 이하, '나': 4천만원~6천만원, '다': 6천만원~8천만원, '라': 8천만원 초과)

○ (2024년 기준 세수효과) 2024년 기준 소득유형별 가구당 공제세액에 서비스 이용가구수, 이용가구 내 근로소득자 비율,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을 각각 곱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132억원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 세수효과: 2024년 기준

(단위: 만원, 가구, %)

| 구 분 | | 가형 | 나형 | 다형 | 라형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영아 종일제 | 공제세액(A) | 30 | 60 | 60 | 60 | |
| | 서비스 이용가구수(B) | 771 | 228 | 26 | 130 | |
| | 근로소득자 비율(C) | 61.2% | 61.2% | 61.2% | 61.2% | |
| | 과세대상자 비율(D) | 48.8% | 90.9% | 99.0% | 99.9% | |
| | 세수효과(A×B×C×D) | 6,869 | 7,604 | 945 | 4,765 | 20,184 |
| 시간제 | 공제세액(A) | 30 | 60 | 60 | 60 | |
| | 서비스 이용가구수(B) | 35,592 | 16,364 | 3,435 | 8,223 | |
| | 근로소득자 비율(C) | 61.2% | 61.2% | 61.2% | 61.2% | |
| | 과세대상자 비율(D) | 48.8% | 90.9% | 99.0% | 99.9% | |
| | 세수효과(A×B×C×D) | 317,116 | 545,761 | 124,869 | 301,413 | 1,289,159 |
| 질병감염 아동지원 | 공제세액(A) | 2.0 | 4.7 | 7.4 | 6.9 | |
| | 서비스 이용가구수(B) | 3,339 | 1,716 | 372 | 980 | |
| | 근로소득자 비율(C) | 61.2% | 61.2% | 61.2% | 61.2% | |
| | 과세대상자 비율(D) | 48.8% | 90.9% | 99.0% | 99.9% | |
| | 세수효과(A×B×C×D) | 1,962 | 4,467 | 1,673 | 4,139 | 12,241 |
| 합 계 | | 325,948 | 557,832 | 127,487 | 310,317 | 1,321,584 |

❑ (추계기간 세수효과) 최근 4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수 및 이용료의 연평균 증감률이 향후 추계기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하고, 서비스유형 및 소득유형에 따라 2024년 기준 세수효과에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세수효과 추계

○ (서비스 이용가구수 증감률) 최근 4년간(2021년~2024년)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수의 연평균 증감률이 추계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

[표 8]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가구수: 2021~2024년

(단위: 가구, %)

| 구 분 |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연평균 증감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영아 종일제 | 가형 | 1,622 | 1,779 | 1,231 | 771 | −22.0% |
| | 나형 | 791 | 708 | 440 | 228 | −33.9% |
| | 다형 | 89 | 56 | 36 | 26 | −33.6% |
| | 라형 | 325 | 217 | 183 | 130 | −26.3% |
| | 계 | 2,827 | 2,760 | 1,890 | 1,155 | −25.8% |
| 시간제 | 가형 | 28,415 | 30,321 | 32,707 | 35,592 | 7.8% |
| | 나형 | 15,437 | 14066 | 15973 | 16364 | 2.0% |
| | 다형 | 3,969 | 3014 | 3166 | 3435 | −4.7% |
| | 라형 | 13,292 | 9567 | 9096 | 8223 | −14.8% |
| | 계 | 61,113 | 56,968 | 60,942 | 63,614 | 1.3% |
| 질병감염 아동지원 | 가형 | 1,106 | 2,060 | 2,943 | 3,339 | 44.5% |
| | 나형 | 516 | 1056 | 1589 | 1716 | 49.3% |
| | 다형 | 179 | 261 | 327 | 372 | 27.6% |
| | 라형 | 614 | 793 | 1132 | 980 | 16.9% |
| | 계 | 2,415 | 4,170 | 5,991 | 6,407 | 38.4% |

자료: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(서비스 이용료 증감률) 최근 4년간(2021~2024년)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이용료의 평균 증감률이 추계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

[표 9]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: 2021~2024년

(단위: 원)

| 구 분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연평균 증감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영아종일제 | 10,040 | 10,550 | 11,080 | 11,630 | 5% |
| 시간제 | 11,545 | 12,135 | 12,740 | 13,370 | 5% |
| 질병감염아동지원 | 12,050 | 12,660 | 13,290 | 13,950 | 5% |

주: 일반가정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, 시간제의 경우 기본형 요금과 종합형 요금의 평균금액

[표 10]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만원)

| |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영아 종일제 | 가형 | 4,615 | 3,782 | 3,100 | 2,541 | 2,083 |
| | 나형 | 3,660 | 2,539 | 1,761 | 1,222 | 848 |
| | 다형 | 459 | 320 | 223 | 155 | 108 |
| | 라형 | 2,853 | 2,208 | 1,709 | 1,322 | 1,023 |
| | 계 | 11,587 | 8,849 | 6,793 | 5,240 | 4,062 |
| 시간제 | 가형 | 406,362 | 460,003 | 520,724 | 589,461 | 667,272 |
| | 나형 | 625,718 | 669,987 | 717,388 | 768,144 | 822,490 |
| | 다형 | 125,058 | 125,152 | 125,247 | 125,341 | 125,436 |
| | 라형 | 241,331 | 215,943 | 193,226 | 172,898 | 154,709 |
| | 계 | 1,398,469 | 1,471,085 | 1,556,585 | 1,655,845 | 1,769,907 |
| 질병감염 아동지원 | 가형 | 4,519 | 6,858 | 10,408 | 15,794 | 23,969 |
| | 나형 | 10,973 | 17,197 | 26,953 | 42,244 | 66,209 |
| | 다형 | 3,004 | 4,025 | 5,393 | 7,227 | 9,683 |
| | 라형 | 6,233 | 7,648 | 9,385 | 11,516 | 14,132 |
| | 계 | 24,728 | 35,728 | 52,139 | 76,781 | 113,992 |
| 합계 | | 1,434,783 | 1,515,662 | 1,615,517 | 1,737,866 | 1,887,961 |

## 다.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7년 143억원 등 5년간 총 819억원(연평균 16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|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 (안 제59조의4) | −143 | −152 | −162 | −174 | −189 | −819 | −164 |

# 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# Ⅴ. 작성자

❑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---|---|---|
| 세제분석1과 | 박성은 | 박연서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박성은 | 02-6788-4668 | ixsepark@assembly.go.kr |